

전기 안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

1. 과업의 목적

본 과업은 군포도시공사 송정체육센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 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대행함으로써 전기시설의 작동기능점검,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결함 또는 미작동부분을 사전에 조치하여 전기공급을 원활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2. 과업의 개요

- 1) 과업명 : 군포도시공사 송정복합체육센터 전기 안전관리 대행
- 2) 용역대상 : 송정복합체육센터 전기시설
- 3) 과업기간 : 2025. 1. ~ 2025. 12. 31(매월 4회 이상)

NO	시설명	설비용량		용량합계	비고
		계약전력	발전기		
1	송정복합체육센터	750kw	118kw	1,085.84kw	월4회 점검
2	태양광 발전시설		105.84kw		
3	전기차 충전시설	112kw			

4) 과업의 범위

- ① 현황조사(자료수집 및 분석)
- ② 전기시설 및 전기사용기기의 점검
- ③ 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

3. 과업의 세부내용

본 과업의 수행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.

- 1) 현황조사(자료수집 및 분석)
 - ① 시설물 관리부서의 전기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·분석
 - ② 기존 관리부서의 준공도서 자료를 활용하되, 기존자료 미흡 부분에 대하여는 정밀 현황조사를 시행
- 2) 전기시설 및 전기사용기기의 점검 실시
- 3) 점검결과 보고서 및 점검결과 문제점 대안보고서는 대행료 청구 시 작성제출

4. 과업의 수행조건

- 1)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① 전기시설 점검결과 보고서
 - ② 점검기록 사진

- 2) 과업수행 우선순위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며 우선순위는 점검 전 관계자에게 점검 사전통보, 적절한 현장조치를 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기록사진 촬영과 과업수행 시 각 점검별 기록사진을 촬영한다.
- 4) 기타사항
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진행중 보안사항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게 구두 통보한 후 이를 서류로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.

5. 과업의 일반지침

- 1) 보고서는 국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한다.
- 2)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기간 중 점검일 3일 이전에 점검일정을 보고하고 전기시설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를 발주처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3)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4)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안이 필요한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5) 성과품 제출
 - ① 점검결과 보고서 1부
 - ② 관계 기록사진첩 1부

6. 과업의 점검책임

- 1) 점검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규정에 의한 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며, 허위로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점검자가 진다.
- 2) 안전관리대행업체는 점검자의 점검결과 정상 작동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책임을 진다.

7. 보안대책

- 1) 과업 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2)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.